

부천시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3. 17) 상정
- 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3. 17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공보실장 윤 인 상)

가. 제안이유

-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서 시보를 상시 열람이 가능하므로 책자로 발행하던 시보의 배부량을 축소·조정하여 매주 발행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자치법규 등은 수시로 발행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관보 및 도보에 게재한 내용은 시보에 중복 게재를 피하고, 새로운 제도나 주요시책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제2항)
- 지금까지는 시보를 책자로 발행하여 통·반장까지 배부하였으나, 인터넷으로 상시열람이 가능하므로 배부대상을 축소 함.(안 제5조)
- 시보편찬을 위한 편집주간 및 보조원 운영을 폐지함.(안 제6조 삭제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제5조 배부기준에서 도의원을 제외한 사유는?</p> <p>○ 현행 배부 방법은?</p>	<p>○ 필요한 경우 배부 할 것이며 시보게재 등 주요 시정소식이 게재됨으로 제외를 하였음.</p> <p>○ 우편 및 통, 반장을 활용 배부 하여 왔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4호
의결 년월일	2005.3.24 (제118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3. 10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서 시보를 상시 열람이 가능하므로 책자로 발행하던 시보의 배부량을 축소·조정하여 매주 발행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자치법규 등은 수시로 발행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나. 관보 및 도보에 게재한 내용은 시보에 중복 게재를 피하고, 새로운 제도나 주요시책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제2항)
- 다. 지금까지는 시보를 책자로 발행하여 통·반장까지 배부하였으나, 인터넷으로 상시열람이 가능하므로 배부대상을 축소 함.(안 제5조)
- 라. 시보편찬을 위한 편집주간 및 보조원 운영을 폐지함.(안 제6조 삭제)

부천시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보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시보발행조례”를 “부천시 시보발행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규격 및 발행일) ①시보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한다.

②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자치법규·훈령 및 예규 등의 경우 공포일자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중 “관보 및 도보의 내용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”를 “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게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배부기준)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·유관기관·관련단체 및 시의원 등에게 배부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시보발행조례	부천시 시보발행 조례
제3조(규격 및 발행일)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, 격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고시 및 공고일등 법정 게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.	제3조(규격 및 발행일) ①시보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한다. ②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자치법규·훈령 및 예규 등의 경우 공포일자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.
제4조(게재내용) ① (생략) ②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관보 및 도보의 내용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.	제4조(게재내용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게재할 수 있다.
제5조(배부기준) 시보는 국가기관, 각시도와 시·군·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, 시의원, 통반장까지 배부한다.	제5조(배부기준)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·유관기관·관련단체 및 시의원 등에게 배부한다.
제6조(편집주간 및 보조원) ①시보 편찬을 위하여 시보 발행부서에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.	<삭 제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가. 주간 : 지방별정 6급 15호 봉 대우 1명</p> <p>나. 보조원 : 지방별정 7급 15호 호봉 대우 1명</p> <p>③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, 수당, 복리후생비, 여비 등의 범위,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, 부천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.</p>	